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동508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심 사 보 고 서

2022년 2월 24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2. 9.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88호)
나. 회부일자: 2023. 2. 13.
다. 상정일자: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2. 21.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우리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정릉동 508 주민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후,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향후 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리계획 대상 재산

(단위: 천원)

구분	사 업 명	소 재 지	건축규모	금액
취 득	정릉동 508 주민커뮤니티 공간(가칭) 조성	성북구 북악산로1길 64 (정릉동 508-76)	연면적 192.29㎡ (지하1층 / 지상2층)	1,950,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커뮤니티공간 조성을 위한 대상지 부지 매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¹⁾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1항²⁾에 따라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1)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07. 10, 2019.9.26, 2022.11.3.)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의 협조를 받아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 07. 10, 2019.9.26.)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11.3.)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길음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심 사 보 고 서

2022년 2월 24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2. 9.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89호)
- 나. 회부일자: 2023. 2. 13.
- 다. 상정일자: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2. 21.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우리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2월 24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2. 9.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90호)
- 나. 회부일자: 2023. 2. 13.
- 다. 상정일자: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2. 21.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가. 제안이유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는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나).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이태원 사고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22.10.30.)

나. 주요내용

- 가).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나). 구세 감면내역

○ 재산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³⁾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⁴⁾에 따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성북구의회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3)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4)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2월 24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결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2. 9.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95호)
- 나. 회부일자: 2023. 2. 13.
- 다. 상정일자: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2. 22. 상정 ·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가. 제안이유

성북구에서 열리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축제·체육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과 안전점검 실시 대상을 확대하고, 성북구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에도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본 조례안은 성북구 관내에서 500명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하는 성북구 주관(또는 주체) 공연·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이 규제하는 대상 규모의 범위를 일부 확대함으로

써 안전사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조례는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를 → 서울특별시 성북구또는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로 수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 구 또는으로 수정
- 성북구가 → 구가 로 수정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5
----------	-------

제안 연월일: 2023년 2월 22일

제안 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에 대한 문구 수정

2. 주요내용

- 조례는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를 → 서울특별시 성북구또는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로 수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 구 또는으로 수정
- 성북구가 → 구가 로 수정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또는”을 “구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성북구가”를 “구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u>구</u> <u>에서 열리는 옥외행사</u> 중 순간 최대 500명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u>서울</u> <u>특별시 성북구(이하 “구” 라</u> <u>한다)</u> 또는 <u>구에서 열리는 옥외</u> <u>행사</u> ----- ----- -----.
1. <u>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u> <u>라 한다)</u> 또는 <u>구가 「지방자</u> <u>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u> <u>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u> <u>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u> <u>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u> <u>라 한다)</u> 이 주최하거나 주관 하는 행사	1. <u>구 또는</u>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u>성북구가</u>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 하는 행사	3. <u>구가</u>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2월 24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2. 9.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96호)
- 나. 회부일자: 2023. 2. 13.
- 다. 상정일자: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2. 22. 상정 ·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안전문화활동 촉진과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 근거로써 마련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⁵⁾

5)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에 따라 성북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전보안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로 수정
-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관내 공공기관, 학교,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제3조의 자격요건을 위해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로 수정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3. 8.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6
----------	-------

제안 연월일: 2023년 2월 22일

제안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문구 수정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로 수정
-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관내 공공기관,
학교,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제3조의 자격요건을
위해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로 수정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해”를 “위해 안전보안관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임기)”를 “(안전보안관의 위촉)”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2.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4.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5.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조의 자격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위 해 안전보안관을 -----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임기)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북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북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1.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2.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4.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	4.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

<u>천한 직원</u> 5. <u>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u> <u>의 교수 또는 전문가</u> 6. <u>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u> <u>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u> <u>사람</u> ② <u>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u> <u>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 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생 략) 2. <u>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u> <u>소를 이전하거나 관내 공공기</u> <u>관, 학교, 기업에 종사하지 않</u> <u>는 경우</u> 3.·4. (생 략)	<u>천한 직원</u> 5. <u>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u> <u>의 교수 또는 전문가</u> 6. <u>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u> <u>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u> <u>사람</u>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u>제3조의 자격요건을 위배하</u> <u>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u> 3.·4.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2월 24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2. 9.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97호)
- 나. 회부일자: 2023. 2. 13.
- 다. 상정일자: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2. 22.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가. 제안이유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자연 재난으로 규정된 ‘폭염’에 대하여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여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제4조6)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

-
- 6)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통장을→같은법 임명된 통장으로
수정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안내→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으로
수정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7
----------	-------

제안 연월일: 2023년 2월 22일

제안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수정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통장을→ 임명된 통장으로 수정
-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안내→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으로 수정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
제11조제1호 중 “행동요령”을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통장 2. ~ 5. (생략) ② (생략)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 ----- ----- ----- -----.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구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폭염특보 발령 시 <u>행동요령</u> 안내 2. · 3. (생략)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 ----- ----- ----- ----- -. 1. ----- <u>행동요령</u> <u>및 안전대책</u> ----- ----- 2. · 3. (현행과 같음)